|  |  |  |
| --- | --- | --- |
|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령 2019년 제2호<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이 2019년 12월 19일 상무부 제20차 부무(部务)회의 심의에 통과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钟山국장 肖亚庆2019년 12월 30일**제1장 총 칙****제1조**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 수준을 높히며 외국인투자 정책조치를 완비하고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境内）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에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제3조** 상무부는 전국 범위 내의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 및 자유무역시범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관련 기관은 본 구역 내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업무를 책임진다.**제4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서에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를 제때에 상무주관부서로 전달해야 한다.상무부는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전달한 투자정보 및 부서 공유정보 등을 제때에 접수, 처리한다. **제5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기업등기시스템 및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을 총괄 지도하고, 외국인투자 정보보고의 실시를 보장한다.**제6조** 각급 상무주관부서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업무 연결을 잘 해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에 대해 전문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정보를 제때에 제출해야 하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도성 보고를 해서는 안 되며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2장 보고서의 주체, 내용 및 방식****제8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최초보고서, 변경보고서, 말소보고서, 연도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 처리 시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 비（非）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을 인수합병할 경우, 인수합병대상 기업 변경등기 처리 시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가 최초보고서 제출 시, 기업의 기본 정보, 투자자와 그 실제통제인의 정보, 투자 거래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최초보고서의 정보가 변경되어 기업변경등기 비안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 변경등기 비안（备案）처리 시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 변경등기 비안（备案）에 관련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변경 사항 발생 후 20일의 근무일 내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정관에 따라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의결 시점을 변경사항의 발생 시점으로 하며 법률과 법규에 변경 사항의 발효 조건에 대해 별도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는 시점을 변경사항의 발생 시점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상장회사 및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된 회사는 외국투자자의 지분율 변동누적이 5%를 초과하거나 외국측 지주 혹은 상대적 지주 지위가 변화되었을 경우에만 투자자 및 그 소지지분 변경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보고서 제출 시, 기업의 기본 정보, 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정보, 투자 거래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 말소 혹은 국내자본기업으로 전환 시에는, 기업말소등기 혹은 기업변경등기 처리 후 이미 말소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상무주관부서로 전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차기 연도부터 연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연도보고서 제출 시, 기업의 기본 정보, 투자자와 그 실제통제인의 정보, 기업 경영과 자산 부채 등 정보를 송부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종의 허가를 받은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제16조** 최초보고서, 변경보고서 및 연도보고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한 필요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실제 상황과 기업 등록, 기업 정보공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상무부에서 공고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한다.  **제3장 정보의 공유, 공시 및 정정****제17조** 상무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는 정보보고 업무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정보공유체계」을 구축해야 한다.법률과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 외에, 관련부서는 직책 이행 과정에서 얻은 외국인투자 정보를 제때에 상무주관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는 <기업 정보공시 잠정조례>에 따라 사회에 공시하거나,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의하에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및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되었거나, 누락된 투자 관련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사후보고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 정보공시 잠정조례> 제9조에 열거된 연도보고서 공시 정보에 대한 사후보고 또는 정정은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되었거나, 누락된 투자 관련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에 20일 근무일 이내에 사후보고 또는 정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지와 관련된 정정사항은 정정 전과 후의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제20조** 상무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본 방법 준수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상무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추출검사 채택, 고발에 따른 검사 진행, 관련 부서 혹은 사법기관의 건의와 전달 상황에 대한 검사 진행 및 직권에 의한 검사 개시 등의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 상무주관부서는 추출검사 방식으로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보고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무작위로 검사 대상자를 추출해 무작위로 법 집행 검사인원을 선발 파견하며, 추출검사 항목 및 조사 처리 결과를 제때에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을 통해 공시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 했을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피신고인이 명확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고발 접수 후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관련 부서 및 사법기관은 직책 이행 과정 중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감독검사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 주관부서는 관련 건의 접수 후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가 실제에 맞지 않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무주관부서의 행정 처벌 결정 기록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무주관부서는 직권에 의해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2조** 상무주관부서는 현지조사와 서면검사 등의 형식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타부서로부터 정보를 받아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시기적절 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상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피검자의 관련 자료를 검열 혹은 요청할 수 있으며 피검자는 검사에 협조하여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상무주관부서는 감독검사를 실시 시, 피검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하거나, 피검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되며, 기타 불법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상무주관부서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직책 이행 과정 중 알게 된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기밀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제25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투자 정보를 제출하여 상무주관부서에서 통지한 후에도 불구하고 본 방법 제19조에 따라 사후보고 또는 정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20일 근무일 이내에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1)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보보고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정보 보고 시 진실을 숨기거나 오도성 혹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속된 업종,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 관련여부, 기업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 등 중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3)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방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투자 정보를 제출하여 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다시 본 방법 관련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상무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중대상황**제26조** 상무주관부서가 감독검사 중 파악한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보보고 의무 이행을 따르지 않은 관련 상황은 외국인투자정보시스템에 기입하고, 국가의 신용체계구축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감독관리를 보완한다.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보 보고의무 위반으로 상무주관부서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상황을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의 공시플랫폼에 공시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재시킨다.상무주관부서는 시장감독관리, 외환, 세관, 세무 등의 관련 부서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보고 의무 이행 및 해당 행정 처벌의 관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제27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 공시플랫폼 상의 관련 정보 기록이 완벽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명 자료를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해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정정해야 한다.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정보보고 의무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외국인투자정보보고시스템 공시플랫폼 상의 관련 정보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경우 삭제해야 한다.  **제6장 부 칙****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투자(다중 투자 포함)하여 기업을 설립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록 비안 연도보고서를 제출 후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해당 정보를상무주관부서로 전달하며 상기 기업은 별도 제출이 필요없다.**제29조** 외국인투자가 설립한 투자성 회사, 창업투자기업 및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합명기업의 경내투자기업 설립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제30조** 비（非）기업형식의 외국인투자는 외국투자자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법률과 행정법규가 기업의 설립, 변경, 말소등기 전 업종주관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신청 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32조**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금융업계에 대한 투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 및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의 투자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투자 정보를 제출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상무부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제35조**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관리 잠행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商务部、市场监管总局令2019年第2号《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已经2019年12月19日商务部第20次部务会议审议通过，并经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同意，现予公布，自2020年1月1日起施行。                                 部长  钟 山局长  肖亚庆2019年12月30日**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进一步扩大对外开放，提升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水平，完善外商投资政策措施，改善营商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及《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制定本办法。**第二条** 外国投资者直接或者间接在中国境内进行投资活动，应由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根据本办法向商务主管部门报送投资信息。**第三条** 商务部负责统筹和指导全国范围内外商投资信息报告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以及自由贸易试验区、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的相关机构负责本区域内外商投资信息报告工作。**第四条**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应当通过企业登记系统以及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商务主管部门报送投资信息。市场监管部门应当及时将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报送的上述投资信息推送至商务主管部门。商务部建立外商投资信息报告系统，及时接收、处理市场监管部门推送的投资信息以及部门共享信息等。**第五条**　市场监管总局统筹指导全国企业登记系统、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建设，保障外商投资信息报告的实施。**第六条**　各级商务主管部门和市场监管部门应当做好工作衔接。商务主管部门应当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报送投资信息提供专门指导。**第七条**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应当及时报送投资信息，遵循真实、准确、完整原则，不得进行虚假或误导性报告，不得有重大遗漏。 **第二章 报告主体、内容与方式****第八条**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应当按照本办法规定通过提交初始报告、变更报告、注销报告、年度报告等方式报送投资信息。**第九条**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企业，应于办理外商投资企业设立登记时通过企业登记系统提交初始报告。外国投资者股权并购境内非外商投资企业，应在办理被并购企业变更登记时通过企业登记系统提交初始报告。**第十条** 外国投资者提交初始报告，应当报送企业基本信息、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信息、投资交易信息等信息。**第十一条** 初始报告的信息发生变更，涉及企业变更登记（备案）的，外商投资企业应于办理企业变更登记（备案）时通过企业登记系统提交变更报告。不涉及企业变更登记（备案）的，外商投资企业应于变更事项发生后20个工作日内通过企业登记系统提交变更报告。企业根据章程对变更事项作出决议的，以作出决议的时间为变更事项的发生时间；法律法规对变更事项的生效条件另有要求的，以满足相应要求的时间为变更事项的发生时间。外商投资的上市公司及在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的公司，可仅在外国投资者持股比例变化累计超过5%或者引起外方控股、相对控股地位发生变化时，报告投资者及其所持股份变更信息。**第十二条** 外商投资企业提交变更报告，应当报送企业基本信息、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信息、投资交易信息等信息的变更情况。**第十三条**　外商投资企业注销或者转为内资企业的，在办理企业注销登记或者企业变更登记后视同已提交注销报告，相关信息由市场监管部门推送至商务主管部门，外商投资企业无需另行报送。**第十四条** 外商投资企业应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提交上一年度的年度报告。当年设立的外商投资企业，自下一年起报送年度报告。**第十五条** 外商投资企业提交年度报告，应当报送企业基本信息、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信息、企业经营和资产负债等信息，涉及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的，还应当报送获得相关行业许可信息。**第十六条**　初始报告、变更报告和年度报告等的具体内容，按照确有必要原则，结合外商投资实际情况和企业登记注册、企业信息公示的有关规定确定，由商务部以公告形式对外发布。 **第三章 信息共享、公示与更正****第十七条** 商务主管部门与有关部门应当根据信息报告工作需要建立外商投资信息共享机制。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有关部门在履行职责过程中获取的外商投资信息，应当及时与商务主管部门共享。**第十八条**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报送的投资信息，根据《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应当向社会公示或者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同意公示的，将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及外商投资信息报告系统向社会公示。**第十九条**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发现其存在未报、错报、漏报有关投资信息的，应当及时进行补报或更正。外商投资企业对《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第九条所列年度报告公示信息的补报或者更正应当符合该条例有关规定。商务主管部门发现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存在未报、错报、漏报的，应当通知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于20个工作日内进行补报或更正。更正涉及公示事项的，更正前后的信息应当同时公示。 **第四章 监督管理****第二十条**　商务主管部门对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遵守本办法情况实施监督检查。商务主管部门可联合有关部门，采取抽查、根据举报进行检查、根据有关部门或司法机关的建议和反映的情况进行检查，以及依职权启动检查等方式开展监督检查。**第二十一条** 商务主管部门采取抽查方式对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履行信息报告义务的情况实施监督检查，应当随机抽取检查对象、随机选派执法检查人员，抽查事项及查处结果及时通过外商投资信息报告系统公示平台予以公示。公民、法人或其他组织发现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存在违反本办法的行为的，可向商务主管部门举报。举报采取书面形式，有明确的被举报人，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商务主管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其他有关部门或司法机关在履行职责的过程中，发现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有违反本办法的行为的，可向商务主管部门提出监督检查的建议，商务主管部门接到相关建议后应当依法及时处理。对于未按本办法的规定进行报告，或曾有报告不实、对监督检查不予配合、拒不履行商务主管部门作出的行政处罚决定记录的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商务主管部门可依职权对其启动检查。**第二十二**条 商务主管部门可采取实地核查、书面检查等方式进行监督检查，可根据需要从其他部门获取信息用于核实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报送的投资信息是否真实、准确、完整、及时。商务主管部门可依法查阅或者要求被检查人提供有关材料，被检查人应当配合检查，如实提供。**第二十三条** 商务主管部门实施监督检查不得妨碍被检查人正常的生产经营活动，不得接受被检查人提供的财物或者服务，不得谋取其他非法利益。**第二十四条** 商务主管部门、市场监管部门应当依法保护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的商业秘密。 **第五章 法律责任****第二十五条**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未按照本办法要求报送投资信息，且在商务主管部门通知后未按照本办法第十九条予以补报或更正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其于20个工作日内改正；逾期不改正的，处十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逾期不改正且存在以下情形的，处三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一）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故意逃避履行信息报告义务，或在进行信息报告时隐瞒真实情况、提供误导性或虚假信息；（二）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就所属行业、是否涉及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企业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等重要信息报送错误；（三）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未按照本办法要求报送投资信息，并因此受到行政处罚的，两年内再次违反本办法有关要求；（四）商务主管部门认定的其他严重情形。**第二十六条** 商务主管部门在监督检查中掌握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未依法履行信息报告义务的有关情况，应当记入外商投资信息报告系统，并按照国家关于信用体系建设的有关规定完善信用监管。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因违反信息报告义务受到商务主管部门行政处罚的，商务主管部门可将相关情况在外商投资信息报告系统公示平台上予以公示，并按照国家有关规定纳入信用信息系统。商务主管部门可与市场监管、外汇、海关、税务等有关部门共享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履行信息报告义务以及受到相应行政处罚的有关情况。**第二十七条**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认为外商投资信息报告系统公示平台上有关信息记录不完整或者有错误的，可提供相关证明材料并向商务主管部门申请修正。经核查属实的，予以修正。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改正违法行为、履行相关义务后1年内未再发生违反信息报告义务行为的，可向商务主管部门申请移除外商投资信息报告系统公示平台上有关信息记录。经核查属实的，予以移除。 **第六章 附 则****第二十八条** 外商投资企业在中国境内投资（含多层次投资）设立企业的，在向市场监管部门办理登记备案、报送年报信息后，相关信息由市场监管部门推送至商务主管部门，上述企业无需另行报送。**第二十九条** 外商投资举办的投资性公司、创业投资企业和以投资为主要业务的合伙企业在境内投资设立企业的，应当参照本办法第二章的规定报送投资信息。**第三十条**　非企业形式的外商投资，应由外国投资者参照本办法第二章的规定报送投资信息，但通过部门信息共享可以获得相关信息的除外。**第三十一条**　法律、行政法规规定企业设立、变更、注销登记前须行业主管部门许可的，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应当在申请登记注册时向市场监管部门提交有关批准文件。**第三十二条**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银行业、证券业、保险业等金融行业，适用本办法。**第三十三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投资者以及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的投资，参照本办法报送投资信息。**第三十四条** 本办法由商务部、市场监管总局负责解释。**第三十五条** 本办法自2020年1月1日起实施。《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同时废止。 |